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10월 4일
- 회부일자 : 2003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 사회복지단체의 집적화로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 「참여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과
- 청남대의 단순한 관리권만으로는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조성함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재산중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4. 주요골자

##### □ 재산의 취득

######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을량동 1193번지의 1
- 사업규모 : 연 5,455㎡(1,650평)
  - 지하·옥탑 :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
  - 1~3층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기기전서관, 물류창고 등
  - 4 층 : 사회복지단체 사무실(17개)
  - 5 층 : 대강당, 프로그램실, 도서관 등
- 사업기간 : 2003. 10 ~ 2005. 12
- 사 업 비 : 5,200백만원(국비 500, 도비 4,700)

###### < 청남대(국유)재산 부지 매입 >

- 위 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산 40-1의 일원
- 사업규모 : 토지 330필지 1,844,843㎡(558,065평)
  - 충 북 : 277필지 1,290,442㎡
  - 대 전 : 53필지 554,401㎡
- 사업기간 : 2003. 10~12
- 사 업 비 : 3,000백만원(특별교부세)

## 5. 검토의견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집적화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남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소재 공유지(부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52억(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각종 사회복지단체를 입주시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설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센터의 건립은 필요할 것이나,

본 센터의 건립을 위한 자원대책과

현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장애인·노약자 진출·입에 따른 교통 위험문제, 주차장 확보문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임.

○ <청남대(국유)계산 부지매입 사업>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대통령의 청남대 소유·관리권이 관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일반에게 개방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매입하려는 토지 중 대전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입방안과, 재정경제부로부터 1년간 무상대부 승인된 청남대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과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2002년 공유계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